

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(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)의 2019년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, 자금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학교법인의 당기운영차액 및 누적 운영차액이 각각 (-)708백만원, (-)23,57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,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가 3,989백만원(전기 : 3,927백만원)입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(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)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운영성과 자금수지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0년 5월 22일

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

감사 김용철 (공인회계사)

감사

피감사자(입회인)

이사 이상구